

제19대 대선 대비 지방공사·공단 행위제한 규정

1 공직선거 입후보 제한 (공직선거법 §53①6, §53②2)

- (대상)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·공단 상근 임원
- (내용) 선거일 전 30일 전(4.9.)까지 사직

2 선거운동 금지 (공직선거법 §60①5)

- (대상)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·공단 상근 임·직원
- (내용) 선거운동 일체

- 선거운동 :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(§58)
-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
 -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
 -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
 -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·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
 - 통상적 정당활동
 - 명절 및 석가탄신일·기독탄신일 등에 의례적 인사말 문자메시지 전송

3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(공직선거법 §86①)

- (대상)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·공단 상근 임·직원

상시 금지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(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)의 업적 홍보•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•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·발표
선거기간 (4.17.~5.9.) 금지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 기공식 거행• 정상적 업무외 출장•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 방문

4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(공직선거법 §87①)

- (대상)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·공단
- (내용) 기관·단체명의 또는 그 대표 명의의 선거운동 금지